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이용 약관

【시행 2026. 07. 00.】【교통서비스처 2026. 07. 0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인천국제공항 운영과 관련하여 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2. “주차장관리운영자회사”(이하 “운영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을 위탁관리·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공식주차대행업체”라 함은 공사와 공식주차대행 운영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천국제공항의 주차장 관리운영은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차장의 구분) 이 약관을 인천공항 구역 내 모든 주차장에 적용하며, 다른 약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가 있는 주차장은 해당 약관 및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위치별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 주차요금의 감면은 별표 2의 주차장 사용료 감면 기준표를 적용한다.

③ 공식주차대행업체를 이용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주차구역에 따라 다르며, 단기주차장 내 주차 시 단기주차장 요금, 그 외 구역에 주차 시 장기주차장 요금과 같다. 또한, 정기주차권을 발급한 차량이 공식주차대행을 이용할 시에도 주차요금을 면제하지 않고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상기 주차요금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무료 회차시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주차장별로 이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의 환불)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을 환불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정산한 후 카드로 대체 정산을 요구한 경우
2. 이중 청구 등 카드 결제 장비의 이상 또는 오류가 발생하여 환불을 요구한 경우

3. 시스템 에러 등 장비 이상으로 차종이 오인식된 상태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한 후 차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한 경우
4. 별표1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자가 일반요금으로 정산 후 출차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parking.airport.kr)를 통해 환불을 요청한 경우

② 사전정산 시 타 차량의 요금을 결제하고 해당 차량이 출차한 경우, 결제된 주차요금을 환불 하지 않는다.

③ 신용카드, 하이패스, 모바일앱 등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고 카드사 등과 공사 간의 결제 승인 및 정산 절차가 완료 된 이후에는 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한 주차요금 환불이나 취소는 불가하다.

제7조(주차요금 미납차량의 처리)

① 공사는 꼬리물기 등 고의로 주차요금을 미납하고 도주한 차량은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 및 기타사유로 주차요금을 미납한 차량을 '부정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이 추후 주차장에 재입차할 경우 출차 시 당해 주차요금과 함께 과거 미납된 주차요금을 합산하여 청구 및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자회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 주차장 내 표지, 신호 준수 및 20km/h 이하 운행
2. 주차장에 표시된 주차구획선(백색)내 주차(단, 성수기 및 혼잡상황 대응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공사 또는 운영자회사 교통관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 위치를 달리할 수 있음)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친환경 차량 주차구역, 경차, 가족배려 주차구역,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대·소형 주차구역 준수
4. 역주행 및 추월행위 등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행위 금지
5. 다른 차량의 진출입 및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6. 음주, 도박, 흡연, 고성방가 및 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일체의 영리행위 금지
7. 컨테이너, 화물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거나 사무실, 숙소, 하역장, 창고 등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금지
8. 세차 · 정비 · 급유행위 금지(단 공사가 지정한 구역 내에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험물 또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정악취물질을 반입하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행위 금지
1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금지
11. 자동차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미부착하는 행위,

또는 식별이 곤란하도록 이물질을 부착하는 행위 금지

12.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체하는 행위 금지

제9조(이용규칙 미준수 시 조치사항) ① 공사는 제8조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차량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경고장 스티커 부착 등 주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관할관청에 고발 또는 신고 조치할 수 있다.
2. 주차장 내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 비상상황 대응 등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이동시킬 수 있으며, 주차구역 미준수 등 차량 소유주 귀책에 의한 견인·이동 제반비용은 차량 소유주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의 입차를 제한하거나 출차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험물 적재차량
2.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미부착한 차량, 또는 식별이 곤란하도록 이물질을 부착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타 차량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단기주차장 진입 차량 중 차량 높이가 2.1m를 초과하는 차량,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차량 등)
4. 영업 목적의 택시 및 밴형 화물자동차
5. 공항시설 내 호객행위로 공사에 의해 3회 이상 적발된 택시 및 밴형 화물자동차
6. 부당요금징수 등으로 공사에 의해 3회 이상 적발된 영업용 차량(택시대기장에 한하여 적용)
7.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로 공사에 의해 적발된 차량
8. 비정상적 입차 혹은 출차(3회 이상)로 인한 미인식 처리로 정상적인 주차요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차량

③ 공사 또는 운영자회사는 제1항의 차량 외에도 주차장의 만차 상황 등으로 주차장의 입차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차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공사 또는 운영자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출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소정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차량 등을 멸실, 훼손 또는 오손했을 경우

제10조(이용자 협조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공사 또는 운영자회사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주차장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2. 이용자가 주차장의 시설, 기물, 차량 등의 멸실, 훼손, 오손하였을 때

제11조(배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주차시설 및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8조를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물 결함이 사고 및 차량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입증된 경우 공사가 가입한 보험 범위 안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③ 주차장 내에서 가해자 불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주차장 출차 후 사고 신고 또는 출입구의 4면 카메라를 통한 사고 파손부위가 식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차량운전자 본인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를 VOC 등을 통해 제출하면 공사는 공사에서 가입한 보험사로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2. 사고 조사를 위하여 주차장 내부의 CCTV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영자회사를 방문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로 하여금 공사에 문서로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고가 운영자회사의 근무태만 또는 고의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운영자회사가 그 피해를 배상한다.

⑤ 배상액의 산정은 사고 발생 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12조(주차장내 사고처리)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해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다. 가해자 불명 사고는 공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에서 가입한 공항종합보험을 통해 배상하는 재물손해의 한도에 따라 보상한다.
2. 공식주차대행업체에 주차 의뢰한 차량의 가해자 불명 사고는 공식주차대행업체에서 처리한다.

제13조(공사의 면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손실 등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폭우, 폭설,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손해
2.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 간의 과실로 발생한 차량 간 충돌 및 접촉사고
3. 차량 외부의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 또는 부속품, 차량에 부착하거나 올려둔 물건 등의 분실, 도난 또는 손상
4. 차량 내에 보관된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의 분실 또는 도난
5. 이용자가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거나, 차량 열쇠를 차량 인근에 비치하거나, 창문을 열어두어 발생한 도난 사고
6. 차량의 정비 미비, 차량 방전, 차량 내 인화물질 방치 등에 의한 화재로 인해 발

생한 본인 및 타인의 차량에 대한 피해

7.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배터리 결함, 과충전, 열폭주 등 차량 자체 원인으로 발생한 화대 및 이로 인한 본인 및 타인의 차량에 대한 피해
8. 제14조에 따라 공사가 관계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수행한 자진이동 요청, 견인, 공매 또는 폐자 등의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소유주 및 관계인의 손해

제14조(장기방치차량의 처리) 공사는 인천공항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한 차량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주차한 차량(단기주차장은 1개월)은 잠정적인 방치차량으로 간주하고, 차주에 자진이동을 요청할 수 있다.
2. 별도의 사유 및 요청 없이 6개월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가압류 및 타 주차장(화물터미널 주차장 등)으로 견인할 수 있다.
3. 1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지자체 등에 '사유지 무단방치 차량'으로 신고하여 차량을 견인 및 공매 또는 폐차 요청할 수 있다.
4. 단, 3호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또는 차량의 특성(외국 공관 및 미군 소속 차량 등)으로 인하여 지자체를 통한 처리가 불가한 경우, 공사는 관할 당국 또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직접 공매 또는 폐차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방치차량의 채권자(렌터카 업체, 금융사 등)가 권리 행사를 위해 차량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는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등 공적 절차에 의한 매각이 확정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차량의 요금선납 없이 출차(인도)를 협조할 수 있다.
6. 제5호의 경우 공사는 미납 주차요금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조치를 완료한 후에 차량 인도를 진행하며, 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가압류 시기를 제2호 정한 기간보다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
7.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방치차량의 채권자에게 차량을 인도 완료한 후 발생하는 차량의 손상 및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하여 공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차량 부제의 시행) 자원안보위기 상황 등 정부에서 주차장 차량 부제(5부제, 2부제 등) 및 유사한 정책 시행 시 공사는 이를 준수하여 이용객의 차량번호에 따라 주차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주차데이터의 활용) ① 공사는 주차장 서비스 개선 또는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인천공항 입출차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주차장 이용자가 본인의 차량임을 입증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본인 차량의 입출차내역을 요청하였을 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예약주차장

제17조(예약주차장 신청) ① 예약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인터넷 홈페이지, 웹, 모바일 앱 등)으로 접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예약주차장의 예약은 입차 예정시간 기준 최대 45일 전부터 최소 4시간 전까지 예약시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예약주차장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예약주차장 이용 계약은 예약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17조 제1항에 대한 예약주차장 이용 신청을 하고 예약보증금 10,000원을 선결제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예약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예약주차장 신청 당시 이용 희망일에 예약주차장 잔여면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약이 불가능하다.

제19조(예약의 확인) ① 예약주차장의 계약번호는 예약주차장 계약 성립 및 접수 완료 시 생성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계약번호 생성 시 이용자에게 SMS 등을 통하여 예약 내역을 통지한다.
③ 예약주차장을 예약한 자는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번호/핸드폰 번호/예약 번호 및 예약 시 설정한 비밀번호 또는 차량번호와 본인인증 시 활용한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여 예약 접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제20조(예약주차장의 이용 및 입차 제한) ① 이용자는 최소 1일(24시간)부터 최대 30일까지 예약주차장을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예약주차장 이용자는 예약 입차시간 기준 4시간 전부터 4시간 후까지 예약한 예약주차장에 입차하여야 한다.
③ 입차한 차량이 예약주차장을 어떤 이유에서든 출차한 이후에는 예약의 효력은 상실되며 재입차는 불가능하다.
④ 예약주차장은 무인으로 운영하며, 공사 또는 운영자회사는 필요 사항이 있을 경우 호출기를 통해 응대한다.
⑤ 공사 또는 운영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약서비스 이용자의 예약 또는 입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미니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이용 불가

2. 정기주차권 등록차량은 업무목적 외 이용 불가
3. 2터미널 예약주차장은 높이 3.8m 이상 차량 입차불가

제21조(예약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예약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장기주차장의 요금과 같다. 단, 필요 시 별도 방침에 의해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은 실제 입차한 시기부터 출차 할 때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등은 제5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22조(예약의 변경 및 취소)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입차 예정 시간 4시간 전까지 최대 2회 예약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변경 신청 시 이용자의 이용 희망일에 예약주차장 잔여면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약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③ 이용자는 온라인으로 입차 예정 시간 후 4시간 전까지 예약을 취소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공사는 예약보증금을 반환한다.

제23조(예약 부도 및 예약보증금 환불) ① 공사는 입차 예정 시간을 4시간 초과하여 입차하지 않은 예약 차량에 대해 예약 부도(No-show)로 간주한다.
② 예약 부도 및 예약 취소에 따른 예약보증금의 환불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차 예정시간 전 취소한 경우 : 100% 환불
2. 입차 예정시간 후 4시간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 환불
3. 입차 예정시간 후 4시간이 지나 미입차한 경우 : 0% 환불

③ 이용자가 예약주차장 이용을 완료한 경우, 공사는 납부한 예약보증금을 이용 완료일로부터 카드사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자동 결제 취소 처리한다.

제24조(예약주차장 대한 공사의 책임 및 면책사항) ① 공사는 이용자가 예약주차장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주차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사 및 운영자회사는 예약주차장 내 설비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면제된다.
1.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예약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 지연되는 경우의 책임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3. 이용자가 등록한 정보가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해 멸실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4.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손해

【별표1】 인천공항 주차장별 요금체계

T1	세부분류(주차장명)	차종	적용시간	주차요금(원)
단기 주차장		• 승용차 • 승합차(소형) • 화물차(소형)	기본 30분	1,200
			추가 15분	600
			1일 최대	24,000
장기 주차장		• 승용차 • 승합차(소형) • 화물차(소형)	기본 1시간	1,000
			추가 1시간	1,000
			1일 최대	9,000
		• 승합차(중, 대형) • 화물차(중, 대형)	기본 30분	1,200
			추가 30분	1,200
			1일 최대	12,000
화물/물류 주차장		• 승용차 • 승합차(소형) • 화물차(소형) • 특수차(소형)	기본 15분	500
			추가 15분	500
			1일 최대	10,000
		• 승합차(중, 대형) • 화물차(중, 대형) • 특수차(중, 대형)	기본 15분	600
			추가 15분	600
			1일 최대	12,000

T1	세부분류(주차장명)	차종	적용시간	주차요금(원)
기타 주차장	화물청사역	• 승인 받은 차량	-	-
			-	-
	공항청사	• 승용차 • 승합차(소형) • 화물차(소형)	기본 30분	1,200
			추가 15분	600
			1일 최대	24,000
	행사용	• 승인 받은 차량	-	-
	택시 대기장	• 승인 받은 차량	-	용도 외 사용 시 장기주차장 요금 적용
	노선버스 주차장	• 승용차 • 승합/화물(소형)	기본 1시간	1,000
			추가 1시간	1,000
			1일 최대	9,000
		• 승합/화물(중, 대형)	기본 30분	1,200
			추가 30분	1,200
			1일 최대	12,000
	G3 주차장(지원단지)	• 승인 받은 차량	-	-
	G4입구	• 승인 받은 차량	-	-
	하늘정원1(렌터카)	• 승인 받은 차량	기본 1시간	600
			1일 최대	5400
임시 주차장	공연장(청사 앞)	• 승용차 • 승합차(소형) • 화물차(소형)	•성수기 등 공사가 필요 시 주차요금체계 설정	
	헬기장(청사 앞)			
	청사 임시주차장			
	화물청사역 주변부지			
	PC제작장			

T2	세부분류(주차장명)	차종	적용시간	주차요금(원)
단기 주차장		• 승용차 • 승합차(소형) • 화물차(소형)	기본 30분	1,200
			추가 15분	600
			1일 최대	24,000
장기 주차장		• 승용차 • 승합차(소형) • 화물차(소형)	기본 1시간	1,000
			추가 1시간	1,000
			1일 최대	9,000
		• 승합차(중, 대형) • 화물차(중, 대형)	기본 30분	1,200
			추가 30분	1,200
			1일 최대	12,000
기타 주차장	합동청사	• 승용차 • 승합차(소형) • 화물차(소형)	기본 30분	1,200
			추가 15분	600
			1일 최대	24,000
	행사용	• 승인 받은 차량	-	-
	ICT센터 주차장	• 승인 받은 차량	-	용도 외 사용 시 장기주차장 요금 적용
	택시 대기장	• 승인 받은 차량	-	용도 외 사용 시 장기주차장 요금 적용
	노선버스 주차장	• 승용차 • 승합/화물(소형)	기본 1시간	1,000
			추가 1시간	1,000
			1일 최대	9,000
		• 승합/화물(중, 대형)	기본 30분	1,200
			추가 30분	1,200
			1일 최대	12,000

주1) 공사는 계절, 요일, 혼잡정도 등 주차장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된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주2) 견인화물차로부터 분리된 트레일러의 경우 상기의 화물주차장의 요금을 적용한다.

(참고) 차량의 구분

구 분	소 형	중 형	대 형
승용차	전차량	-	-
승합차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	16인승 이상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최대적재량 1톤 초과 2.5톤 미만, 총 중량 10톤 미만	최대적재량 2.5톤 초과, 총 중량 10톤 초과
특수차	-	총 중량 3.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초과

【별표2】 주차요금 감면 기준표

감면대상	세부기준 및 근거	감면율	
경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	50%	
저공해차량	•「친환경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차량, 기타 한국환경공단(친환경자동차 종합정보지원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차량임이 확인된 차량	1종	50%
		2종	50%
		3종	20%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및 그 시행령 시행 규칙」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 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다.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5·18 민주유공자 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마.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부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는 자	50%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2자녀이상(출산·입양·가정위탁 포함), 막내나이 18세 이하)이며,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의 차량 가. 정기주차권관리시스템에서 사전 감면신청 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로부터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조건이 자동 확인되어 사전등록을 마친 자의 차량 나. 가항의 자동 확인이 불가한 차량(세대분리, 3대 합가 등) 중 인천공항 정기주차권 관리시스템(parking.airport.kr)에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다자녀 사전등록을 마친 자의 차량 다. 공항이용 후 인천공항 정기주차권관리시스템에 30일 이내 사후환불 신청을 마친 자의 차량	50%	
PM·NOx 저감장치 부착차량	•PM·NOx 저감장치 부착차량으로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 또는 한국환경공단 확인서를 제출한 차량	20%	

주) 공사는 주차장 운영상황, 기타 법률의 제·개정 등 제반사항에 따라 감면 기준 및 감면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